

제 226 호

1972. 4. 28

등록번호 : 제 39 호

등록년월일 : 1953년 6월 18일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양택석

편집인 : 공보실장 손완수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시 보

이 영구보존문자는 미
필립으로
1967. 3. ...
서울특별시 시민강

차 례

규 칙 1

고 시 2

1. 시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시 보 세 분 목 차

1. 규	칙	1
제 1215 호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개정	1
2. 고	시	2
제 50 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결정	2
제 52 호	사료성분 등록	3
제 53 호	도시계획 시설(화물, 자동차 정류장) 결정	3
제 54 호	도시계획(시외버스 정류장)시설 결정	4
제 55 호	서울도시계획사업 시설 일부 변경 시행	6

규 칙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2년 월 일

◎서울특별시칙 제 1215 호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개정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중 제 1 호, 제 2 호 및 제 6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 시장 직속의 관과 시의 국을 말한다.

2. 국장, 시장 직속의 관과 시의 국장을 말한다.

6. 청, 소, 본청이외의 구, 공무원교육원, 한강건설사업소, 지하철 건설본부, 시민회관, 구출장소, 농촌지도소, 경찰서, 소방서, 등 기타 시의 사업소를 말한다.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중 징수관, 수입금 출납원 및 분임수입금 출납원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청 소

징수관 : 청소의장 <단 소의 장은 시세제외>

수입금 : 세무제 1.2 파장 <세무제

출납원 : 1.2 파장이 없는 청, 소는 경리담당파장 또는 경리담당계장 이하 본호와 같다>

분임수입금출납원 : 세무제 1.2 파장징수계장

구출장소는 세무제 1 계장 또는 세무계장, 동사무장

제 45 조중 "영제 5 조단행의"을 "법제 39 조 제 1 항 단서의"으로 한다.

제 61 조제 1 항중 "1만원미만"을 "2만원미만"으로 한다.

제 64 조 제 1 호 "잡급"을 "잡급 및 인부임"으로 제 3 호 "피복비 및 급식비"를 "피복비 및 급량비"로 제 4 호 "이용료 및 수수료"를 "수수료및수선비"로 하고 제 6 호 특별판공비를 신설한다.

제 67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67 조의 2 <대체수지차액의 정리>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2. 수납한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 70 조제 2 항중 "출납통지서"를 "출납원에게 납부통지서"로 한다.

제 88 조제 1 항중 "현금유가증권의 보고"를 "현금유가증권의 망실보고"로 한다.

제 118 조제 1 항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청, 소에서 직접 사용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재산은 그 청소의 장 <단 동은 그 관할 구청장>

제 161 조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전결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50 호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설결정

서울도시계획 사업으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설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및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2.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성북구청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제 178 조제 1 항중 “기한 1 월이내”를 “기한경과후 1 월이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2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함.

1972. 4. 21

서울특별시장

1. 시설명 :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2. 위치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림동 산 125-1
3. 면적 : 9,960 평 (32,868 .)
4. 사업명칭 : 서울법원직원 주택단지 조성사업

가. 가 로 조 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 장	기 점	종 점	비 고
소로	2	1	8	90	신림동산 125-1 기존도로와 접속	신림동산 125-1	
"	3	1	6	166	신림동산 125-1	자 연 공 원	
"	"	2	"	67	"	"	
"	"	3	"	95	"	"	
"	"	4	"	50	"	"	
"	"	5	"	80	"	"	
"	"	6	"	60	"	"	
"	"	7	"	40	"	"	
"	"	8	"	40	"	"	
"	4	1	4	48	"	"	
"	"	2	"	256	"	"	
"	"	3	"	284	"	"	
"	"	4	"	12	"	"	
"	"	5	"	40	"	"	
"	"	6	"	159	"	"	

나. 아동공원 시설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아 동 공 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림동산 125 - 1	450 명	1,485

다. 쓰레기 적환장 및 주차장 시설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쓰레기적환장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림동산 123 - 1	19 명	63
주 차 장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림동산 123 - 1	21 "	70

◎서울특별시고시 제 52 호

사 료 성 분 등 록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료성분 등록을
고시함.

1972. 4

서울특별시 장

등록번호	공 장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사 료		
				종 류	명 칭	용 도
4~124	제 일 축 산 료 협 동 사 료	성 동 구 길동 465-1	황종원	배합사료	어 린 돼 지 배 합 사 료	생 후 대 약 2 ~ 4 개 월
4~125	"	"	"	"	중 돼 지	생 후 대 약 4 개 월
4~126	"	"	"	"	씨 돼 지	이 상 의 비 율 포 생 후 대 약 9 개 월 이 상 되 는 씨 돼 지

사 료 성 분 량				유 효 기 간	비 고
최 소 량		최 대 량			
조 단 백 질	조 지 방	조 섬 유	조 회 분	부 터	까 지
% 이 상 15.0	% 이 상 2.0	% 이 하 7.0	% 이 하 9.0	72.4 ~ 74.4	
12.0	2.0	8.0	10.0	" "	
12.0	2.0	11.0	11.0	" "	

◎서울특별시고시 제 53 호

도시계획시설(화물자동차정류장) 결정

1.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시설(화물자동차정류장)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함.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및
영등포구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임.

2. 시설 조서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남부화물자동차정류장	영등포구서초동산 120 번지 외 11 필지	33,000 ^{m²}	

3. 도면 : 별첨 (도면은 서울시청에 보관)

1972. 4. 25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고시제 54호

도시계획 (시외버스정류장) 시설결정

관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동대문구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임.

1. 서울특별시관내 도시계획시설 (시외
버스정류장)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및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결정 고시함

2. 시설 조서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동부자동차 (시외버스) 정류장	동대문구용두동 33-1 외 12 필지	12,020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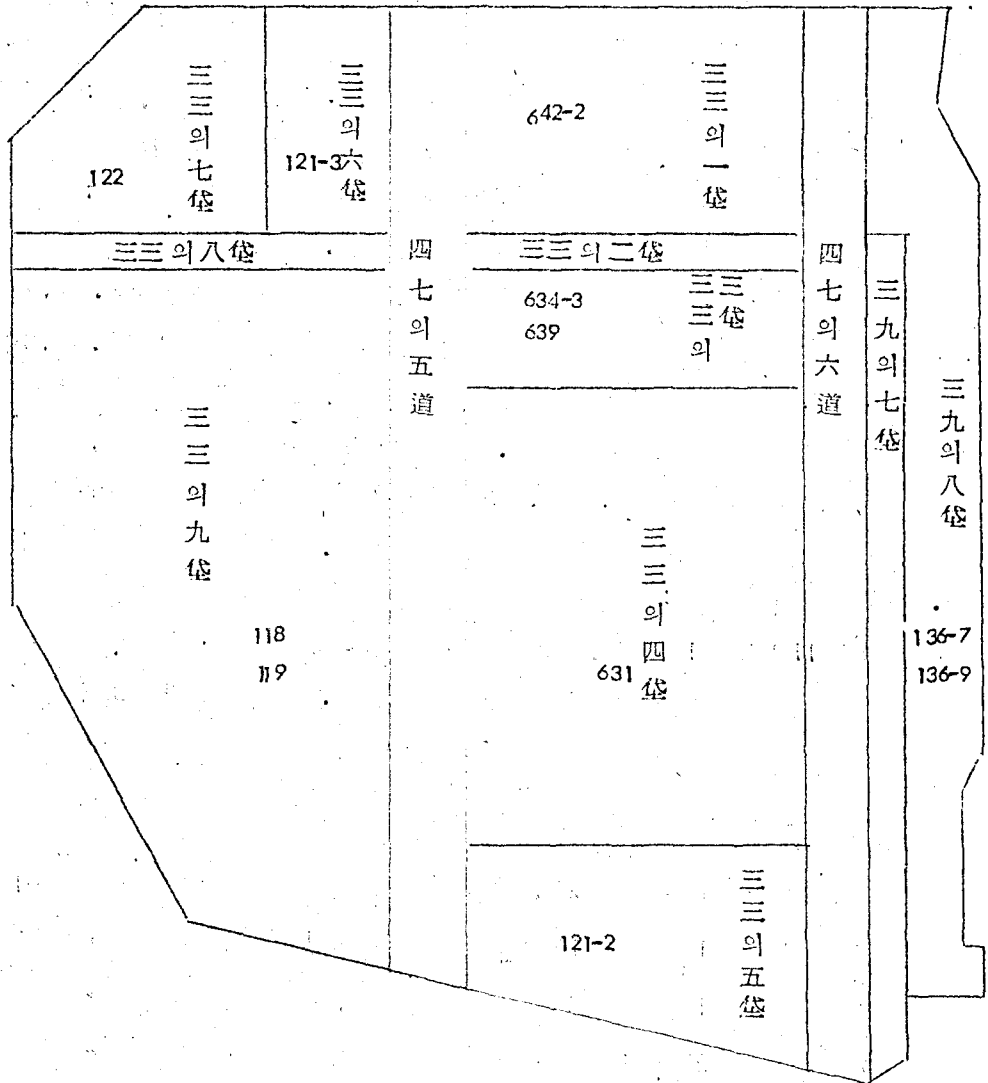
3. 도 면 : 별첨 (도면은 서울시청에 보관함)

1972. 4. 25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고시제 54 호

시의 버스 정류장



1972. 4. 25

서울특별시강

◎서울특별시고시제 55 호

서울도시계획사업시설 일부변경시행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으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실시계획 인가한바 있는 송천 주택단지의 시설변경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는 동시 동법 제 25 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 시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

2.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성북구청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함.

1972. 4. 25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집행지의위치 : 서울특별시성북구 미아동산 112 의 1 와 8 필지

나. 사업의 종류 : 일단의 주택조성사업

명칭 : 송천주택단지

시행면적 : 기정 5,970 명

변경 6,400 명

다. 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성북구 미아동 745 - 32

성명 : 심 재 길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1972. 2. 22

준 공 1972. 5. 30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와 건물 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된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첨)

사. 시설 변경 조서

(가) 가 로 시 설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3	1	6	233	미아동산 112-4	미아동산 112-1	
변경	"	3	1	6	177	" 776 의 1	"	위치변경
신설	"	4	1	4	124	" 산 112-4	"	
기정	"	4	2	4	212	" "	"	
변경	"	4	2	4	114	" 산 112-5	미아동산 112-4	"
신설	"	"	3	4	116	" "	"	
기정	"	"	1	4	133	" 산 112-1	미아동산 112-4	
변경	"	"	4	4	116	" "	미아동산 112-1	위치변경
신설	"	"	5	4	91	" "	"	
기정	"	"	3	4	63	" "	"	
변경	"	"	6	4	119	" "	"	"
신설	"	"	7	4	87	" "	"	

(나) 아 동 공 원

구 분	명 칭	면 적	위 치	비 고
기 정	아동공원	200 평	미아동산 112-1	
변 경	"	200 평		위 치 조정

(다) 주차장 및 쓰레기 적환장

구 분	명 칭	면 적	위 치	비 고
기 정	쓰레기적환장	56	미아동산 112-1	
변 경	및 주차장	60	"	위 치 조정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생략)